

심의결과 위안대로그결

의안번호	회의차수	회의일자	제 의 지
제 57호	제29차	1987. 10. 29	총재 박성상

의안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의결사항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의관계
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57조, 제59조, 제62조 및 한국은행법시행령 제18조

제의취지 국제수지 흑자지속에 따라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이 확대되고 있어
과잉유동성이 우려되므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공급능력을 기초적으로
축소하여 통화공급의 적정화를 기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 의결할 것을 제의함

참고사항 제의관계 법규조항의 발체

한국은행법 제57조

-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② 생 락

한국은행법 제59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57조, 제58조의 범위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1. 요구불예금과 기한부예금 또는 기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분류에 의한 종류별은행예금에 대한 개별적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의 결정
2. 생 락

한국은행법 제62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을 인상할 때에는 점진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전통고를 하여야 한다.

한국은행법시행령 제18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최저예금지급준비율을 인상할 때에는 늦어도 2주일 이전에 금융기관에 통고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의 예금지급준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

현행	행	개정 (안)												
제 1 조	(생 략)	제 1 조 현행과 같음												
제 2 조 (예금지급준비의 최저율)	① 한국은행법 제 5 7 조 및 제 5 9 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tr> <th>예금종별</th> <th>지급준비율</th> </tr> <tr> <td>저축성 예금</td> <td><u>4 . 5 %</u></td> </tr> <tr> <td>요구불 예금</td> <td><u>4 . 5 %</u></td> </tr> </table>	예금종별	지급준비율	저축성 예금	<u>4 . 5 %</u>	요구불 예금	<u>4 . 5 %</u>	제 2 조 (예금지급준비의 최저율) ① 한국은행법 제 5 7 조 및 제 5 9 조에 의하여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여야 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은 다음과 같다. <table border="1"> <tr> <th>예금종별</th> <th>지급준비율</th> </tr> <tr> <td>저축성 예금</td> <td><u>7 . 0 %</u></td> </tr> <tr> <td>요구불 예금</td> <td><u>7 . 0 %</u></td> </tr> </table>	예금종별	지급준비율	저축성 예금	<u>7 . 0 %</u>	요구불 예금	<u>7 . 0 %</u>
예금종별	지급준비율													
저축성 예금	<u>4 . 5 %</u>													
요구불 예금	<u>4 . 5 %</u>													
예금종별	지급준비율													
저축성 예금	<u>7 . 0 %</u>													
요구불 예금	<u>7 . 0 %</u>													
②~④	(생 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 3 조~제 6 조	(생 략)	제 3 조~제 6 조 현행과 같음												
		부 칙												
	(신 설)	이 규정은 1 9 8 7 . 1 1 . 2 3 (1 1 월 하반월 요지준 적립시) 부터 시행한다 .												